

2023 년도

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 통보서

(수시)

1.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2.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제54조(장기요양급여의 관리·평가)에 의해 실시한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를 「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」 제6조(평가결과의 공표 및 상담)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통보하며,

3. 아울러 평가불가 기관과 평가결과가 '미흡'인 일부 지표에 대해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 - ※ 통보 평가지표
 <시설> 시설기준, 인력기준, 식품위생관리, 감염병관리, 노인인권보호
 <주야간보호·단기보호> 시설기준, 인력기준
 - ※ 등급표기 방법
 - 정기평가 : 장기요양급여 종류별로 3년마다 정기평가 실시
 - 수시평가 : 정기평가 결과 하위등급 기관등에 대해 정기평가 다음해에 수시평가 실시
 - 평가등급(5등급) : 절대평가등급 기준에 따라 급여종류별로 A(최우수), B(우수), C(양호), D(보통), E(미흡)

(입소시설10인미만)

시군구 : 서울특별시 중구

장기요양기관명	장기요양기관 기호	급여 종류	점수 (등급)	기관 운영	환경 및 안전	수급자 권리보장	급여제 공과정	급여제 공결과	가점	
효심원	11114000043	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	71.34	9.11	26.5	7	20.68	8.05		
			수시 D							
	평가 지표	시설기준								
		인력기준								
		식품위생관리								
		감염병관리								
		노인인권보호	미흡	②21년 3분기 교육 실시기록 없음(분기별 미 실시), ③21년 3분기, 22년 1분기, 3분기 등 교육 실시기록 없음(분기별 미 실시), ④면담N: 일부직원 답변 미흡, ⑤운영위원회 회의내용 상 수급자 또는 보호자대표 요구사항(불만사항) 청취 확인 안됨						

장기 요양 기관명	장기요양기관 기호	급여 종류	점수 (등급)	기관 운영	환경 및 안전	수급자 권리보장	급여제 공과정	급여제 공결과	가점
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	----------	------------	----------	------------	-------------	------------	------------	----



2024년 5월 7일

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



장기요양기관 평가불가기관 통보서

(수시)

(입소시설10인미만)

시군구 : 서울특별시 중구

연번	장기요양기관명	장기요양기관기호	급여종류	평가불가사유
	대상기관 없음			

2024년 5월 7일

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

